

서울고등법원 2021. 6. 23 선고 2021나2001641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1. 6. 23 선고 2021나200164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10 선고 2020가합54337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원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지만형

변론종결 2021. 4. 30.

판결선고 2021. 6. 2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가합543374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주위적으로,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2019. 2. 2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312,000,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예비적으로,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2019. 1. 23. 체결된 제3자 지급보증약정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312,000,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별지 포함).

2. 고쳐 쓰는 부분

- 제1심판결 4면 14행의 “이사”를 “대표이사”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 4면 표 안 2행의 “양도 인”을 “양도대표이사”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 6면 15행의 “위 법원은”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위 법원은 2020. 7. 10. “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리는 근저당권의 결산기가 도래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변제에 적용된다.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결산기는 2019. 7. 16.경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그 이전인 2019. 3. 21.경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인 3억 1,2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근저당권은 잔존 피담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존속한다.”

는 점을 근거로,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3억 1,2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위 말소청구를 인용하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.』

○ 제1심판결 6면 20행의 “2020나204531호”를 “2020나2024531호”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6면 21행부터 7면 1행까지의 “피고의 상고에 따라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20다290781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.”를 “피고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20다290781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. 3. 11.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. 한편, 피고는 2020. 12. 21.경 위 관련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기존의 대위변제금과 별도로 3억 1,200만 원을 지급하였고,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.”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7면 2, 3행의 “을 제1 내지 3, 5, 8호증”을 “을 제1 내지 3, 5, 8, 15호증”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8면 8행의 “으로서”를 “으로써”로 고친다. ○ 제1심판결 15면 19행의 “20009”를 “2009”로 고친다.

3. 추가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거래계약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으로서 개별적인 물품대금채무가 일부 변제되더라도 거래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일부 변제금액에 상응하는 새로운 물품이 추가로 공급되므로, 피고가 원고에게 개별 채무를 대위변제하더라도 D의 거래한도액은 감축되지 않는다. 결국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하여 D의 적극재산은 그 송금액만큼 감소한 반면,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위 거래한도액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, 제3자 지급보증약정이나 그에 기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. 판단

D이 2019. 3.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3억 1,200만 원을 송금하고, 피고가 2019. 3. 21. 위 송금액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한 이후에도, 여전히 3억 1,200만 원 이상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따라서 위 2019. 3. 21.자

대위변제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,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송금으로 D의 총 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.

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, ① 관련사건에서 위 2019. 3. 21.자 대위변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, ② 그리하여 원고는 2020. 12. 21.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물상보증인인 피고로부터 채권최고액 전액에 해당하는 3억 1,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은 점, ③ 결국 D의 자금인 이 사건 송금액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만 사용되었을 뿐, 피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전혀 사용되지 못하였고, 피고는 별도로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송금 및 그에 기한 2019. 3. 21.자 대위변제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에 불과하고 D의 변제자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종호, 판사 안승훈, 판사 구태회